

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(제10조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
2. 개별 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3조 제4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3조 제4항제2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	법 제13조 제4항제3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 제4항제4호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	
마.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13조 제4항제5호	업무 정지 6개월	지정 취소	